|  |  |  |
| --- | --- | --- |
| **본인**  **(인감)확인** | **담당자** | **책임자** |
|  |  |  |

**가입자정보 및 매수예정상품 등록(변경) 신청서**

|  |
| --- |
| **신청일 : 년 월 일** |

**(개인형 IRP)**

**1. 계약정보 ( □ 등록 , □ 변경 )**

|  |  |  |  |
| --- | --- | --- | --- |
| 가입자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 핸드폰 |  | 이메일 |  |
| 가입자격  ※가입자격 증빙서류 제출  (당행퇴직연금가입자 제외) | □ 당행 퇴직연금 가입자 □ 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 미가입자 (개인부담금 입금허용) (택1)   |  | | --- | | □ 자영업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사학연금가입자) □ 우체국직원  □ 급여소득자 (근속년수 1년 이상)  □ 급여소득자 (근속년수 1년 미만 및 단시간 근로자) | | | |

**2. 예금성 상품(정기예금 등) 선택 시**

|  |  |
| --- | --- |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일반금융소비자 | □ 만19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만65세 이상 |
| 전문금융소비자 | □ 만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성인 □ 법인ᆞ조합 등 단체 |
| 설명희망금융소비자 | □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지만 예금상품 설명을 듣기를 희망하는 경우 |

**3. 별도 통지**

|  |  |  |  |
| --- | --- | --- | --- |
| 별도통지여부 | □ 부 □ 여 | | |
| 별도통지주소 |  | | |
| 별도통지 휴대번호 |  | 별도통지 이메일 |  |

**4. 사전지정운용제도**

|  |  |
| --- | --- |
| 등록 | □ 등록 □ 변경 |
| 운용상품명 | **(예시) 부산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 **🔾 사전지정운용제도 주요내용**   |  |  |  | | --- | --- | --- |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다음의 사항** | **법 제21조의3제2항 ~ 제5항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사항** | | 1) 위험등급,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 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수익률  2)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 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 1)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대기 후 4주, 통지 후 2주)이 경과한 후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임  2) 가입자는 관련 법에 의거 언제든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음 | 1)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2)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  -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해당 방법에 따라 운용 가능함을 통지  -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본인은 운용 예정인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설명서를 (제공 받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위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대 리 인 :** (인)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 ※ 개인형I ※ 개인형IRP 제도 부담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제도)는 한가지 방법만 선정 가능합니다. | | |

**5. 매수예정상품 등록**

| □디폴트옵션 대체  (운용비율 제외) | \*운용상품 별도 등록하지않고 디폴트옵션으로 대체 운용 원하는 경우 체크 후 운용비율 미기재  (기업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모두 디폴트옵션으로 대체됩니다) | |
| --- | --- | --- |
| □ 둘 다 동일 | \*기업부담금과 개인부담금을 동일한 상품과 비율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 체크 후 한쪽만 기재 | |
| 운용상품명 (예시) OO은행 정기예금 1년제 | | 운용비율주) |
| □ 균등배분 등록 | \*운용상품별 균등 비율 등록 원하는 경우 체크 후, 운용비율 미기재 | |
| 기업부담금  (퇴직금) |  | % |
|  | % |
|  | % |
| 비율합계 | | 100 % |
| □ 균등배분 등록 | \*운용상품별 균등 비율 등록 원하는 경우 체크 후, 운용비율 미기재 | |
| 개인부담금  (세액공제용) |  | % |
|  | % |
|  | % |
| 비율합계 | | 100 % |

주)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 자산 중 위험자산(예: 주식형, 주식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로 운용비율을 제한합니다.

※ 고객이 기존에 선택한 사전지정운용제도와 동일한 상품을 운용상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상품의 운용지시가 가능하며,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운용 불가합니다.

**6. 상품운용관련 확인사항**

| 구분 | 내용 | |
| --- | --- | --- |
| **상품 매매에 따른 유의사항 확인** | ㅇ 상품의 매매신청시 거래일이 다음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되며,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상이하므로 매매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다음영업일,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입/매도기준일 +1영업일)  ㅇ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매수완료된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해당금리를 확인하시려면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www.busanbank.co.kr](http://www.busanbank.co.kr))에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저축은행 투자 시 4,500만원 이상 매수 요청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매수됩니다.  ㅇ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 등) 제공기관이 제공한도를 초과하여 제공이 불가한 경우 해당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지시 할 때 당행이 지정한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동 매수될 수 있습니다. | |
| **원리금보장상품 예금자보호 확인** | ㅇ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ㅇ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IRP, 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ㅇ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IRP, 개인형IRP)에 운용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법적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한도(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와 같으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행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IRP, 개인형IRP) 상품으로 저축은행 상품을 운용 시 이자 금액을 감안하여 저축은행별 원금기준 4,500만원으로 투자가능한도를 제한합니다. | |
|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시 상품운용방법 확인** | ㅇ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부산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대한 상품운용이 불가합니다.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부산은행에서 제공가능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지시 하셔야 합니다.  ㅇ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 제공회사인 타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ㅇ 원리금보장상품(시중은행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등)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 미포함)의 1영업일 전까지 별도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확정급여형(DB)  1)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2)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서 정한 금융기관 간 상품교환 한도 초과 등) 당행이 지정한 동일한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으로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IRP, 개인형IRP)  2022년 7월 12일부터 변경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이하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 동의 고객: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매수)  2) 사전지정운용제도 미동의 고객: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금리가 낮은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으로 운용  (단, 2023년 7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 | |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확인** | ㅇ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만기 자금을 운용합니다.  ㅇ 상품 만기도래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시점까지 만기 자금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ㅇ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주간의 대기기간 동안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ㅇ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은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시점 가입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합니다.  ㅇ 은행은 가입자가 동일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하였으나, 납입주기로 인하여 만기가 여러 번에 거쳐 도래하는 경우, 이를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하여 최초 만기시에만 가입자 통지와 대기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는 만기 도래 즉시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내 구성 상품에 대해 개별적인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구성 상품의 비중 대로 이루어 집니다.  ㅇ 정기예금이 포함된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등) 운용방법 확인** | ㅇ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ㅇ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ㅇ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ㅇ 집합투자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 상 기준가 적용일자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일자는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ㅇ ETF 매매의 경우 15시 이전 신청시 당일 매매 체결되나, 15시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어 매매 체결됩니다  ㅇ ETF 매수시 주당 가격에 미달하여 미체결된 금액은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ㅇ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ETF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지급(퇴직/계약이전, 해지 등) 거래 중 보유하신 ETF의 분배금이 발생할 경우 예정된 지급일보다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기타사항 안내** | ㅇ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당행의 자료열람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ㅇ 수수료 납입은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상 명시된 수수료율)에 의거 매년 계약응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적립금에서 차감 또는 현금으로 징구됩니다.  ㅇ 퇴직연금 신규(계약이전 포함)후 1개월 이내 여신실행(신규, 대환, 재약정)이 제한되며, 여신실행 1개월 이내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 |
| **위 확인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신 청 인** : (인)  **대 리 인 :** (인) |

**7. 예금성 상품 설명 (일반금융소비자 및 설명 희망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필작성)**

|  |
| --- |
| 내 용 |
| 가. 상품의 내용(계약기간,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나. 이자율(수익률,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만기후이율 및 각 이율에 대한 산출근거 포함)  라. 계약의 해지ᆞ해제, 위법계약해지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예금자보호 여부 및 그 내용  **[일반ᆞ설명희망금융소비자] 본인은 가입 예금 상품에 대한 위 중요한 사항 등 설명서 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대 리 인 :** (인) |

**8. 투자성 상품 설명 (투자성상품을 운용하는 경우에만 자필작성)**

| 내 용 |
| --- |
| |  |  |  | | --- | --- | --- | |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 투자성상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ᆞ해제  3) 증권의 환매 및 매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1) 계약기간  2) 금융상품의 구조  3) 기대수익(객관적ᆞ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  5) 위험등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6) 계약상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그 요건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운용 예정인 투자성 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 전 투자설명서를 (제공 받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위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대 리 인 :** (인)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9. 계약서류 제공 확인 (공통계약서류 및 해당 상품에 체크 및 자필작성)**

|  |
| --- |
| 내 용 |
| **□ 공통계약서류 : 자산운용비율 등록(변경) 신청서(공통)**   |  |  |  |  | | --- | --- | --- | --- | | **□ 예금성상품(정기예금 등)** | **□ 사전지정운용상품** | **□ 투자성상품(펀드, ELB등)** | **□ 보장성상품(GIC등)** | | **- 약관**  **- 상품설명서** | **- 약관**  **- (간이)투자설명서**  **- 상품설명서**  **※ 포트폴리오 상품설명서 포함** | **- 약관**  **- (간이)투자설명서**  **- 상품설명서**  **- 집합투자증권상품설명서** | **- 약관**  **- 상품설명서** |   **신청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으며, 가입 상품에 따른 상품서류 일체를 직원용 1부는 은행이 보관하고, 고객용 1부는 본인이 직접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인 :** (인)  **대 리 인 :** (인) |

**위와 같이 본인은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과 관련하여 확인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기에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운용방법 및 비율등록 거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대 리 인 :** (인)

**※ 이 계약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부산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